
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62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9. 27.

발의자 : 박정·이훈·권칠승

어기구·김병욱·신경민

윤후덕·윤관석·김정우

신창현·송옥주·민홍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,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일정 구매비율을 정하여 포함하여야 함.

그런데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‘제품’을 물품,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 비해, 현행법은 여성기업제품을 ‘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’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품 외에 용역, 공사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.

이에 여성기업제품의 의미를 물품,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제품과의 형평성을 제

고하고 여성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
제9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”을 “생산·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·용역 및 공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공공기관의 우선 구매)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 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직접 <u>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</u>(이하 이 조에서 “여성기업제품”이라 한다)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 다.</p> <p>② ~ ⑤ (생 략)</p>	<p>제9조(공공기관의 우선 구매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생산·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·용</u> <u>역 및 공사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